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토록 함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다. 행정안전부장관 승인통보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268(2008.03.07)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8. 3. 27. ~ 2008. 4. 1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8.05.08)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 가. 특급호텔 : 20%
 -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p><u>제14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u>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p> <p>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이하한 경우</p> <p>가. 특급호텔 : 20%</p> <p>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p>